아산시 공고 제2022-2977호

공 고

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7조의3제9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 예정 사실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9월 16일

아 산 시 장

☐ 제 목 : 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

☐ 공고기간 : 2022. 9. 16. ~ 2022. 10. 17.

☐ 행정처분 내역

등록번호	충남-아산-14-0029 충남-아산-12-0054	소유자	홍** 최** 외1명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관할 시·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등록(수출말소 및 자진말소 등)		
처 분 내 용	**축산관계시설출입차량 말소**		
처분예정일자	2022. 10. 18.		
법 적 근 거	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7조의3(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)제9항		

☐ 안내사항

등록사항 직권말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의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, 의견 제출이 없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,「가축전염병예방법」 제17조의3제9항에 따라 직권말소 합니다.

☐ 문의처

아산시 축수산과 (☏ 041-537-384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행정심판법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,
2.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